
- 2016년 사업소 재무감사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삼척시
(기획감사실)

【일련번호 : 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2016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급량비 집행시 현금영수증 카드 미사용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급량비 집행 부적정 현황 : 붙임참조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예산 집행절차 준수’에 따르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 조례, 규칙, 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또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의하면 급량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 제공 시 1인 1식당 7천원 이내에서 집행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15. 9. 2. ‘제15호 태풍 복상에 따른 비상근 무자 급식비’ 등 총 16건 6,120천 원을 집행하면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를 집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카드로 집행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집행하여 관련규정과 다르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를 집행할 때에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량비 집행 부적정 현황

번호	지급일자	적요	지출금액(원)	결제방법
		총16건	6,120,000	
1	2015.09.02	제15호 태풍 복상에 따른 비상근무자 급식비	49,000	신용카드
2	2015.10.14	9월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지출	350,000	"
3	2015.11.23	10월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지출	434,000	"
4	2015.12.15	11월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지출	532,000	"
5	2015.12.31	12월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지출	525,000	"
6	2016.02.25	1월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지출	483,000	"
7	2016.02.25	폭설 제설작업 비상근무자 급식	182,000	"
8	2016.03.28	2월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지출	560,000	"
9	2016.04.26	3월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지출	378,000	"
10	2016.05.10	3월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지출	182,000	"
11	2016.05.20	4월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지출	539,000	"
12	2016.06.23	5월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지출	497,000	"
13	2016.07.25	6월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지출	448,000	"
14	2016.08.23	7월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지출	469,000	"
15	2016.09.23	8월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지출	140,000	"
16	2016.10.26	9월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지출	364,000	"

【일련번호 : 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일상감사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일상감사 미이행 현황

(단위 : 천원)

최초지급일자	보조사업명	교부금액	지급대상
계	4건	664,325	
2015.04.14	2015년 고랭지 특화단지 활력화 시범사업	100,000	***외 11
2015.04.28	2015년 포도원 생력화 과원 모델 시범	100,000	@@@외 14
2015.05.07	2015년 병해충 방제비 지원	124,325	\$\$\$외 84
2015.05.11	2015년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얼굴있는로컬푸드형체험상품개발)	340,000	%%% 영농조합법인

2. 내 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삼척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의하면 감사기구의 장은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집행(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보조금 지원 업무,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추진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최종 결재권자(「삼척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결재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요청서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보조금 교부결정 금액이 1억원 이상인 ‘2015년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삼척콩 얼굴있는 로컬푸드형 체험상품 개발’등 총 4건의 교부 보조금 지원업무를 추진하면서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일상감사를 요청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삼척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일상감사요청서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3】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6,884원

【제 목】 법인신용카드 결재계좌 등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계좌별 발생이자 현황

(단위 : 원)

구 분	발 생 일	금 액	세입조치 여부
계		6,884	
세입세출외현금 통장	2016.06.21	1,020	미조치
카드대금 통장	2015.12.27	2,470	미조치
	2016.06.26	970	
당직 통장	2015.12.27	1,873	미조치
	2016.06.26	551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요령”에 따르면 법인신용카드(이하 “법인카드”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품의)를 한 후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또한, 착오입금 등에 의하여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반납조치를 하는 등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법인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해당 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 하여야 하고, 「삼척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의3에 따르면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감사일 현재 법인카드 결제계좌 등 잔액을 확인한 결과, 위 현황과 같이 계좌별 발생한 예금이자 총 6,884원을 세입조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좌별 발생한 이자 등 총 6,884원을 조속한 시일내에 세입조치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4】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2016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도	계	지역개발채권 미소화 건수	지역개발채권 초과소화 건수	비고
계	12건	-	12건	
2015	8	-	8	
2016	4	-	4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 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 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농기계 부착용 야간 반사스티커 구입’ 등 12건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120천 원을 추가로 소화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12,320원

【제목】 강사료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강사료 지급 시 소득세 등 원천징수 부적정 내역

지급일자	과목명	강사명	지급액(원)	원천징수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16.08.31	8월 농촌여성 생활기술 전문교육 강사수당	***	280,000	-	-

2. 내 용

「소득세법」 제21조 및 84조에 의하면 강사료에 대한 과세근거로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을 기타소득으로 하고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최저한은 5만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하면 수입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규정함으로써 최소 25만원 이상의 강사료를 지급할 경우 과세대상으로서 같은 법 제127조에 의하여 기타소득(강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8월 농촌여성 생활 기술 전문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2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소득세 등을 공제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12,320원(소득세 11,200원, 지방소득세 1,120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필요경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의 20%인 세액 12,320원을 추징하여 주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6】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2016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내역

연번	예산과목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금액(원)
계			6건	300,000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5.11	동료직원 자녀 결혼축의금	50,000
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6.22	동료직원 부친 사망조의금	50,000
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7.13	동료직원 부친 사망조의금	50,000
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10.06	동료직원 모친 사망조의금	50,000
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02.11	동료직원 조의금 지출	50,000
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04.22	동료직원 축의금 지출	50,000

나.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연번	예산과목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금액(원)
계			8건	6,142,000
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01.30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환영 회식	724,000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06.10	2015 창조농업 연찬회 회식	653,000
3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07.06	직원퇴직에 따른 송별회식	850,000
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07.13	직원 인사에 따른 송별회식	800,000
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9.16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협의 회식	666,000
6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6.01.14	농촌지원과 직원인사이동 회식	784,000
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1.20	농촌지도자회 유대강화와 사업계획 협의	550,000
8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6.07.04	직원퇴직에 따른 송별회식	1,115,000

2. 내 용

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업무추진비 집행 공통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은 현금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며,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각 업무추진비 공통으로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직원 자녀 결혼 축의금’ 등 6건을 현금으로 집행하면서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필히 현금집행 내역서를 회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하나, 상기 내역과 같이 현금으로 집행하면서 집행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환영 회식」 등 총 8건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수혜자인 주된 상대방의 소속(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아 관련 규정의 적용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급량비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급량비 신용카드 집행현황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금액(원)	결제방법
2015.12.31	12월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182,000	신용카드

나. 급량비 일괄 지급 현황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금액(원)	비고
계	3건	2,664,000	
2015.04.27	1~3월 교육연구과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895,000	
2015.08.07	2분기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1,080,000	
2015.09.10	7~8월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689,000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 제공시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7,000원 이내에서 집행하되, 현금영수증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 사용 절차에 따르면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 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 사용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급식비를 집행하면서 반드시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총 1건 182천 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현금영수증 카드의 의무적 사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현금영수증 사용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 지출되는 급량비의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5년에 총 3건에 대하여 약 2~3개월 단위로 급량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를 집행할 때에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 주시고, 정기적으로 소액예산 지출되는 급량비의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8】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20,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도	계	지역개발채권 미소화 건수	지역개발채권 초과소화 건수	비고
계	6건	1건	5건	
2015	5	1	4	
2016	1	-	1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 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공용차량 수리’ 등 6건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20천원 미소화하고, 3,855천 원을 추가로 소화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20천원을 소화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2016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연번	예산과목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금액(원)
계			5건	3,108,500
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4.07.09	직원 회식	900,000
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4.11.28	직원 회식	632,000
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07.14	직원 송별회 회식	550,000
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07.28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회식	511,000
6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12.23	직원 회식	515,500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각 업무추진비 공통으로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원 회식」 등 총 5건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수혜자인 주된 상대방의 소속(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아 관련 규정의 적용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2016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내역

(단위 : 천원)

지급일자	적 요	채 주	지급액	소화 채권액	정당 채권액	차액
계	3건					미소화 0 초과소화 95
'15.04.29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비	유통센터	8,032	205	120	+85
'15.06.15	식품접객업소 남은음식 포장용 봉투 구입		16,790	255	250	+5
'16.03.24	음압기 구입		4,300	65	60	+5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 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 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비’ 등 총 3건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95천원을 추가로 소화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2016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급량비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급량비 신용카드 집행현황

연도별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금액(원)	결재방법
계	6건		3,998,000	
2015	2015. 02. 05	2015년 1월 초과근무자 급식비	707,000	신용카드
"	2015. 03. 11	2015년 2월 초과근무자 급식비	351,000	신용카드
"	2015. 04. 02	2015년 3월 초과근무자 급식비	756,000	신용카드
"	2015. 05. 08	2015년 4월 초과근무자 급식비	609,000	신용카드
"	2015. 06. 08	2015년 5월 초과근무자 급식비	490,000	신용카드
"	2015. 07. 06	2015년 6월 초과근무자 급식비	1,085,000	신용카드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 제공시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7,000원 이내에서 집행하되, 현금영수증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급식비를 집행하면서 반드시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총 6건 3,998천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현금영수증 카드의 의무적 사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를 집행할 때에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2016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일상감사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일상감사 미이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보조사업명	교부금액	지급대상
계	총 6건	1,666,816	
2015	●●●●● 분만실 운영지원	500,000	●●●●●
”	●●●●● 보호자없는 병실운영비 지원	172,800	”
”	●●●●● 중환자실 운영비지원	100,000	”
2016	●●●●●분만실 운영지원	500,000	”
”	●●●●● 보호자없는 병실운영비 지원	194,016	”
”	●●●●● 중환자실 운영비 지원	200,000	”

2. 내 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삼척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의하면 감사기구의 장은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집행(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보조금 지원 업무,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추진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최종 결재권자(「삼척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결재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요청서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보조금 교부결정 금액이 1억원 이상인 ‘●●●●● 분만실 운영지원’등 총 6건의 1,666,816천원의 교부 보조금 지원업무를 추진하면서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일상감사를 요청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삼척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일상감사요청서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3】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2016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환경관리비 미정산 내역

(단위 : 원)

지급일자	계약명	도급사	지급액	환경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2016.02.04	보건출장소 리모델링공사(창호)	△△△△△(주)	15,633,000	0	20,310

2. 내 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하면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비용의 세부산출기준은 [별표 8]에 세부 산출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보건출장소 리모델링공사(창호)”의 공사를 준공하면서 도급내역에 명시된 환경관리비를 비교 정산 후 공사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환경관리비 20,310원을 정산하지 않고 지출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향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정산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55,000원

【제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내역

(단위 : 천원)

지급일자	적 요	채 주	지급액	소화 채권액	정당 채권액	차액
계	4건					미소화 55 초과소화 35
'15.03.04	2015 방문건강관리 기초조사지 인쇄	▼▼▼▼	2,059	30	0 (카드)	+30
'15.04.28	2015 임산부 건강증진 교육 홍보물품 구입	■ ■ ■ ■	4,995	75	70	+5
'16.03.31	건강증진과 프린터 토너 구입	◁ ◁ ◁	1,738	0	25	-25
'16.04.26	구강보건사업 홍보용 재료 구입	▼▼▼▼	2,008	0	30	-30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 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 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5 방문건강관리 기초조사 지 인쇄’ 등 총 4건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35천원을 추가로 소화하고, 55천원을 미소화 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55천원을 소화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4~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급량비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급량비 신용카드 집행현황 : 붙임 별첨

연도별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금액(원)	결제방법
계	11건		1,765,000	
2014	2014. 07. 11.	6월 초과근무자 급식비	127,000	신용카드
"	2014. 08. 11.	7월 초과근무자 급식비	59,000	신용카드
"	2014. 09. 02.	8월 초과근무자 급식비	140,000	신용카드
"	2014. 10. 02.	9월 초과근무자 급식비	276,000	신용카드
"	2014. 11. 07.	10월 초과근무자 급식비	189,000	신용카드
2015	2015. 02. 03	1월 초과근무자 급식비	276,000	신용카드
"	2015. 03. 09	2월 초과근무자 급식비	80,000	신용카드
"	2015. 04. 03	3월 초과근무자 급식비	189,000	신용카드
"	2015. 05. 04	4월 초과근무자 급식비	114,000	신용카드
"	2015. 06. 02	5월 초과근무자 급식비	138,000	신용카드
"	2015. 07. 08	6월 초과근무자 급식비	177,000	신용카드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 제공시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7,000원 이내에서 집행하되, 현금영수증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급식비를 집행하면서 반드시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총 11건 1,765천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현금영수증 카드의 의무적 사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를 집행할 때에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40,000원

【제 목】 수입인지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인지 소화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인지 미소화액
2015.11.25	2016년 벽걸이 건강달력 구입비	⓪⓪⓪⓪⓪⓪⓪	11,280,000	20,000
2015.12.16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표지판 구입	■ ■ ■ ■	11,041,000	20,000
2016.03.17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비급여의약품 구입	□ □ □ □	13,284,000	20,000 (초과소화)

2. 내 용

「인지세법」 제1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같은 법 제3조에 의거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 등의' 수입인지를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과세문서인 계약서에 첨부하여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6년 벽걸이 건강달력 구입'등 총 2건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액이 각각 1천만 원 초과이므로 계약 체결 시 각 2만 원의 인지를 소화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2016년도 비급여 의약품 구매 단가계약'시 해당 인지세를 모두 소화하였으나, 2016.03.17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비급여의약품 구입'시 20천원의 인지를 이중으로 소화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인지세법」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지를 소화하시기 바라며, 미징구한 40,000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증빙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일상감사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일상감사 미이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보조사업명	교부금액	지급대상
2016	공공산후조리원개설운영지원	150,000	◆◆◆◆◆ 공공산후조리원

2. 내 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삼척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의하면 감사기구의 장은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집행(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보조금 지원 업무,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추진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최종 결재권자(「삼척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결재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요청서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보조금 교부결정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공산후조리원개설운영지원에 150,000천 원의 교부 보조금 지원업무를 추진하면서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일상감사를 요청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삼척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일상감사요청서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8】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4~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375,000원

【제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내역

연도별	계	지역개발채권 미소화 건수	지역개발채권 초과소화 건수	비고
계	18건	8건	10건	
2014	2	1	1	
2015	13	4	9	
2016	3	3	-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공원 경관조명 보수공사’ 외 17건을 시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375천원을 미소화하고, 1,635천원을 추가로 소화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375천원을 소화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9】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업무추진비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내역

연번	예산과목	집행내용	금액	집행품의일	카드결제일
계		3건	1,619,900		
1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원 회식비	782,000	'15.01.17	'15.01.15
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웃놀이 행사 다과물품 구입	67,900	'15.03.18	'15.03.17
3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원 회식	770,000	'15.05.20	'15.05.18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 조례, 규칙, 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사용시 집행품의 승인 후 원인행위(카드결제)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원 회식비’ 등 총 3건에 대하여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신용카드 사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선 카드결제, 사후 품의를 통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신용카드 사용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품의 승인 후 원인행위(카드결제)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2016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일상감사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일상감사 미이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분류	계약일	사업명	추정금액	비고
1	물품	2015.05.29	포토존(사진판매소) 인화기 구입	30,300	
2	물품	2016.02.01	레일바이크 동절기 방한용 바람막이 제작설치	21,956	

2. 내 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삼척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의하면 감사기구의 장은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집행¹⁾(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²⁾, 예산관리 업무, 보조금 지원 업무,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추진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최종 결재권자(「삼척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결재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요청서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포토존(사진판매소) 인화기 구입’ 등 총 2건의 용역과 물품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추정금액이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고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일상감사를 요청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삼척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따라 일상감사 대상사업의 경우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일상감사요청서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1) 대상업무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재정투융자 대상 사업
2. 주요업무 : 「삼척시 계약심사 운영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업무. 단, 「삼척시 계약심사 운영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예산관리업무 : 가. 5천만원 이상 전용, 나. 5천만원 이상 예비비 집행, 다.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지원 업무 : 교부 결정금액 1억원 이상
5.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계약업무(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구 분	공 사		용 역	물품 제조·구매
	종 합	전문·기타		
추정금액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3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 설계변경 : 계약금액 3억원 이상 공사(전문·기타공사 2억)의 설계변경 누계금액이 10%이상 증가 시

【일련번호 : 2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수 285,000원

【제목】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환경관리비 미정산 내역

(단위 : 원)

지급일자	계약명	지급액	환경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비고
계	7건		3,158,296	
2016.03.31	▶▶▶▶ 전시관 여자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9,773,000	288,000	운반비포함
2016.05.25	□□□ 공원 계단(나무) 보수공사	7,191,000	285,000	운반비포함
2016.06.29	▶▶▶▶ 전시관 장애인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1,934,000	198,000	운반비포함
2016.06.29	▶▶▶▶ 전시관 남자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9,778,000	360,000	운반비포함
2016.08.19	▶▶▶▶ 전시관 출입구 바닥 보수공사	17,928,000	397,296	
2016.08.22	▽▽ 정거장 대합실 환경개선공사	12,987,000	1,600,000	철거 및 폐기물 1식
2016.09.06	레일바이크 및 ◆◆◆ 기념공원 폐공 공사	6,200,000	30,000	

2. 내 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하면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비용의 세부산출기준은 [별표 8]에 세부 산출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어촌민속전시관 여자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의 6건에 대하여 공사를 준공하면서 도급내역에 명시된 환경관리비를 비교 정산 후 공사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을 산출 없이 운반비 포함 1식으로 처리하는 등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한 사용실적의 확인 없이 준공대금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정산하시고, 미정산한 285,000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증빙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2016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정수물품 취득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정수 미취득 물품 구입 현황

(단위 : 원)

지급일자	계약명	거래처	구입금액	통계목
계	4건		3,130,000	
2015.05.06	●●정거장터널테이블관리실에어콘 구입 및 설치	▮▮▮▮▮	490,000	405-01
2015.07.23	◆◆◆기념관 관리사무실 에어컨 구입 및 설치	●●●●	610,000	405-01
2016.09.08	◀◀휴게소 관리실 에어컨 구입	□□□□	750,000	405-01
2016.11.11	☒☒☒공원 제1매표소 냉난방기 구입	●●●●●	1,280,000	405-01

2. 내 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르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이하 "물품수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연도에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려는 예정 수량 및 소요 예산을 포함시켜야 하고, 정수관리대상물품은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5. 5. 6. ◎◎정거장터테이블관리실 에어컨구입 및 설치 등 정수관리대상물품인 냉방기 및 냉난방기 총 4대 3,130,000원을 취득하면서 회계부서로부터 정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물품수급관리계획에도 반영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취득하였다.

【처 분 요 구】

- 향후 정수관리대상 물품은 관계 규정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회계부서 정수 승인 후 취득·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3】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회계서류 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지출결의서 사용 부적정 : 22건 / 22,615천원

※ 세부내역 : [별첨] 참조

2. 내 용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제6장 제121조(계약의 체결) 따르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이나 [별지 제50호서식] 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관리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처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 의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 대신에 [별지 제45호서식] 의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에서는 별첨의 현황과 같이 “레일바이크운영 소요물품 구입” 등 총 22건 22,615,130원을 지출하면서 채주에 계좌입금을 할 경우 계약내용에 따른 구입(물품, 기타) 지출결의서에 의해 주문, 납품, 검수 등 회계절차에 의해 집행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집행시 일반 지출결의서에 의해 집행하여야 함에도 지출결의서를 부적정하게 선택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계약 체결시 「삼척시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 내용에 따른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24】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4~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255,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내역 : 붙임 참조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 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별표 2] 의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비목은 신용카드로 대금 지불 시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전시어종(곤돌메기) 구입’ 외 9건을 시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215천원을 추가로 소화하였고, ‘사육어종 사료구입’ 외 7건을 시행하면서 255천원을 미소화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255천원을 소화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5】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4~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급량비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급량비 신용카드 집행현황

연도별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금액(원)	결제방법
계	4건		917,000	
2014	2014.4.28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1~2월분)	301,000	신용카드
2015	2015.2.4	2015년 1월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189,000	신용카드
2015	2015.3.13	2015년 2월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140,000	신용카드
2015	2015.4.8	2015년 3월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287,000	신용카드

나. 급량비 일괄 지급 현황

연도별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금액(원)	비 고
계	2건		581,000	
2014	2014.4.24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1~2월분)	301,000	
2014	2014.8.12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3~7월분)	280,000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2014.1.1.)에 따르면,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 제공시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7,000원 이내에서 집행하되, 현금영수증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 사용 절차에 따르면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 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 사용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에서는 급식비를 집행하면서 반드시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총 4건 917,000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현금영수증 카드의 의무적 사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현금영수증 사용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 지출되는 급량비의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4년 기간 중 2건에 대하여 최대 5개월분의 급량비를 일시에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를 집행할 때에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 주시고, 정기적으로 소액예산 지출되는 급량비의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6】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4~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80,000원

【제목】 수입인지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인지 소화 부적정 내역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원)	정당인지 소화액	실소화액
계	5건				
2014.5.9	2014년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은어 종묘구입	●●●●	10,000,000	0	20,000
2014.5.16	사육어종 사료구입	◆◆◆	12,249,600	20,000	0
2014.7.16	사육어종 사료구입	◆◆◆	10,241,000	20,000	0
2015.3.16	사육어종 사료구입	◆◆◆	10,257,500	20,000	0
2015.12.1	사육어(송어, 산천어) 사료구입	◆◆◆	10,118,900	20,000	0

2. 내 용

「인지세법」 제1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같은 법 제3조에 의거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 등의' 수입인지를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과세문서인 계약서에 첨부하여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사육어종 사료구입' 외 3건을 계약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액이 각각 1천만 원 초과이므로 계약 체결 시 각 2만원의 인지를 소화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총 8만원의 인지를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1천만원 초과인 사업에 대하여는 「인지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지를 소화하시기 바라며, 미징구한 80,000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증빙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7】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업무추진비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내역

연번	예산과목	집행내용	금액	집행품의일	카드결제일
계		5건	1,124,000		
1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원회식	240,000	'15.02.27	'15.02.26
2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원간담회 급식비	225,000	'15.06.03	'15.06.01
3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원간담회 급식비	240,000	'15.10.20	'15.10.19
4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원화합 등산대회 급식비	236,000	'15.10.26	'15.10.24
5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원화합 간담회 급식비	183,000	'15.12.04	'15.12.02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 조례, 규칙, 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사용시 집행품의 승인 후 원인행위(카드결제)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원 회식」 등 총 5건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신용카드 사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선 카드결제, 사후 품의를 통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신용카드 사용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품의 승인 후 원인행위(카드결제)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8】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환경관리비 미정산 내역

(단위 : 원)

지급일자	계약명	도급사	지급액	환경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비고
2016.06.29	수산자원센터 부속건물(관사) 리모델링 공사(건축)	◆◆◆◆◆	18,511,000	739,200	운반비포함

2. 내 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하면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비용의 세부산출기준은 [별표 8]에 세부 산출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 부속건물(관사) 리모델링 공사(건축)’에 대하여 공사를 준공하면서 도급내역에 명시된 환경관리비를 비교 정산 후 공사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에 운반비 포함 1식으로 처리하는 등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한 사용실적의 확인 없이 준공대금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향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정산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9】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회계서류 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지출결의서 사용 부적정 : 21건 / 7,824천원

※ 세부내역 : [별첨] 참조

2. 내 용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제6장 제121조(계약의 체결) 따르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이나 [별지 제50호서식] 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관리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처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 의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 대신에 [별지 제45호서식] 의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에서는 불임의 현황과 같이 “민물고기전시관 전시어종 사료구입” 등 총 21건 7,824,320원을 지출하면서 채주에 계좌입금을 할 경우 계약내용에 따른 구입(물품, 기타) 지출결의서에 의해 주문, 납품, 검수 등 회계절차에 의해 집행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집행시 일반 지출결의서에 의해 집행하여야 함에도 지출결의서를 부적정하게 선택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계약 체결시 「삼척시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 내용에 따른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30】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내역

지급일	적 요	지급액(원)	지출과목	적 정 지출과목
계	3건	1,253,400		
2015.11.24	고압세척기 구입	415,400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15.11.25	전기밥솥 구입	288,000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16.02.15	TV구입	550,000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서 정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201-01), 공공운영비(201-02), 행사운영비(201-03)로 대분류하고,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각종시설 및 장비의 임차료, 고속도로 통행료, 소규모 용역제공 수수료 등으로, 공공운영비(201-02)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등으로 집행하도록 분류하고 있으며, 사무관리비(201-01)의 일반수용비의 마목에 따르면 “재물 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405(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고압세척기 구매’ 등 3건 총 1,253,400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소모품³⁾으로 보기 어려운 고압세척기, 전기밥솥, TV 등 물품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일반운영비로 지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다르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향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맞는 적정 세출예산 과목으로 예산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3)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다. 소모품의 관리)

【일련번호 : 3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대가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대가지급 부적정 내역 : 붙임 참조

2.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대가의 지급) 제2항에 따르면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제1항(개정 2016.1.15.)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를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시에는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고, 현금영수증 사용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빙서류로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15년 10월 시간외급식비 지출’ 등 2건은 카드사용 이후가 아닌 사용이전에 지출을 완료 하였으며, “사료자판기 구입” 등 8건은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로부터 일련의 청구서류인 세금계산서를 접수하고도 접수일로부터 5일 지난 후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향후 예산 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대가를 지급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3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선금급 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선금급 미정산 내역

(단위 : 원)

선금 지급일	대가 지급일	적요	계약 상대자	계약금액	선금 지급액
2015.10.19	2016.08.12	돌기해삼 수산종묘배양장 건립공사 관급자재(수배전반)	●●●●	42,480,000	29,000,000
2015.10.19	2016.08.12	돌기해삼 수산종묘배양장 건립공사 관급자재(MCC 및 분전반)	●●●●	43,983,000	30,000,000

2. 내 용

「지방재정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의하면,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여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급이나 개산금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이나 개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선금·대가 지급요령)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금전액 사용 시 등에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돌기해삼 수산종묘배양장 건립공사 관급자재(수배전반)’의 1건의 대하여 선금급이 지급되었고 계약상대자가 선금전액을 사용한 때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한 선금사용명세서 제출하여 계약의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나 선금급 사용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처 분 요 구】

- 향후 선금급 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선금급 사용 확인 등 정산조치 하여 주시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